

# 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재공고

2023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0일(토)

대한장애인탁구협회

## 1. 채용분야

채용직	채용직무	인원	담당 직무
2023년 국가대표 지도자	수석코치	1명	-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지도 - 2023 국가대표 상시훈련 지도
기타사항	각 직무별, 동시 지원 불가		

## 2. 응시자격

수석 코치	<p>1.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(대한체육회 선수경력 포함)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. &lt;개정'20.12.18., 개정 '21.12.15.&gt;</p> <p>2.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(데플림픽 포함)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)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,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. &lt;개정 '20.10.29.&gt;</p> <p>3. 국가대표지도자(감독,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)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(징계경력을 포함)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. &lt;개정 '20.9.3.&gt;</p>
----------	--

※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 징계 제22조(징계종류) 2. 지도자에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해임,제명, 나. 경징계: 견책, 감봉(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해당)

### 3. 결격사유(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0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'19.6.19.>
2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'19.6.19.>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<개정 '19.6.19.>
  - 가. 폭력, 성희롱·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(강간·강제추행 포함)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<개정 '20.10.29.>
 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), 횡령·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<개정 '20.10.29.>
 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'19.6.19.>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신설 '19.6.19.>
6.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'20.10.29.>
  - 가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- 나.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7.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'20.10.29.>
  - 가. 1천만원 초과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- 나. 1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8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9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<개정 '19.6.19.>

#### 4. 채용조건

- 계약기간: 2023년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기간
  - ※ 최초 계약 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전, 전문체육위원회 재임용 평가에 따라 재임용 가능
- 훈련기간: 2023년 7월~11월 예정 [약 5개월]
  -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2023년 10월 22일~10월 28일) 포함
- 급여지급
  - 수석코치: 연봉제(월급제)

구분		급여	비고
수석코치	무직장	월 450만원(세전)	대한장애인체육회 급여기준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
	겸직(기존 직장 有)	월 350만원(세전)	

- ※ 훈련기간에만 급여가 지급되며, 상기 채용조건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 등에 따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NPC의 종목별 AD 배정에 따라, 전원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(국가대표 훈련만 참여), 지도자 면접 결과(점수)에 순위를 부여하고, 순위에 따라 AD 배정 예정

#### 5. 채용방법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, 2차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선발
- 「국가대표 선발 규정」에 의거하여,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득함

#### 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이력서, 자기소개서 포함) 1부
  - ② 국가대표 지도자 활동 계획서 1부(수석코치)
  - ③ 훈련방법(목표, 전략 등) PPT 발표자료 1부
  - ④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
    -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
    - 선수경력(선수등록확인서) 응시자격 확인 必
- ※ 선수등록확인서 발급처: 대한장애인탁구협회, 대한탁구협회
- ⑤ 경력증명서 각 1부
    -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: 시도장애인체육회(탁구실업팀) 및 기타 장애인 경기 지도 확인서 내 정확한 날짜 기재(20xx.xx.xx~20xx.xx.xx. ) 00년 00개월
  -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
## 7. 서류접수

- 지원서 양식: 별첨문서 참조
- 접수기간: 2023년 6월 10일(토)~6월 19일(월) 13시까지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 (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  - 이메일: [kttad@hanmail.net](mailto:kttad@hanmail.net)
  - 메일 제목: '[2023 국가대표 (수석코치) 지원] 000(이름) 지원서 제출'

## 8. 전형일정(안)

- 공고일자: 2023년 6월 10일(토) 본 회 홈페이지 공지
- 서류접수: 2023년 6월 10일(토)~6월 19일(월) 13시까지
-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: 2023년 6월 19일(월) / 개별 안내 예정
- 면접전형: 미정 /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
- 합격자 발표: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 예정
  - ※ 합격자 발표 후, 이사회 승인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이 진행됨에 승인 여부에 따라 차후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
  - ※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(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)에 의거하여, 합격자 발표 후, 1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둬

제11조(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) <신설 '20.10.29.>

- ① 가맹단체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.
- ② 가맹단체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미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,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1. 해당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
  2.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, 지도자, 소속팀의 장

## 9. 기타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, 누락,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 공고를 실시하며,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 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(02-477-54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